

실험·실습기자재선정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1998. 6. 1. 개정 2000. 9. 1.
개정 2001. 9. 1. 개정 2013. 7. 1.
 개정 201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실험·실습 기자재 (이하 “기자재”) 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심의, 처리, 조정하기 위하여 실험·실습 기자재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1. 기자재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
2. 기자재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기자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13.7.1.>

제7조(자료요청 및 조사)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